

●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-022호

채권 압류 통지 공시송달

귀사가 체납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귀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8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귀하(귀사)가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한 귀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1) 성명(상호) : 허옥주(주)엘피스컴퍼니, (주)코리아넘버원

체납자	성명(상호)	허옥주 (주)엘피스컴퍼니, (주)코리아넘버원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	506-81-83551 171711-0*****		
	주소(사업장)	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39(대흥동)				
채무자 (제3채무자)		대구은행				
압류재산의 표시		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				
압류일자		2023년 3월 3일				
압류사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000-0453-0002-932	2020-07-30	2020-09-28	1,200,000	396,000	1,596,000

2) 성명(상호) : 이현석(㈜잔디피플)
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이현석 (㈜잔디피플)	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	753-88-00932 110111-6*****	
	주 소 (사업장)	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, 107호				
채 무 자 (제 3채 무 자)		우리은행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<p>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</p> <p>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</p> <p>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</p> <p>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</p>				
압 류 일 자		2023년 3월 3일				
압 류 사 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 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010	2022-04-21	2022-05-05	4,500,000	405,000	4,905,000

3) 성명(상호) : 최민찬(다이아)
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최민찬 (다이아)		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	270-08-01977 961209-1*****	
	주 소 (사업장)	경기 부천시 부천로 436번길 16, 103동 201호				
채 무 자 (제 3채 무 자)		기업은행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<p>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</p> <p>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</p> <p>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</p> <p>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</p>				
압 류 일 자		2023년 3월 3일				
압 류 사 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 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013	2022-01-07	2022-03-07	3,000,000	414,000	3,414,000

4) 성명(상호) : 박한솔(퍼스트(1st))
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박한솔 (퍼스트(1st))		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	370-23-00704 900521-1*****	
	주 소 (사업장)	서울 구로구 새말로 97, 9층 19호(신도림테크노마트)				
채 무 자 (제 3채 무 자)		토스뱅크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<p>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</p> <p>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</p> <p>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</p> <p>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</p>				
압 류 일 자		2023년 3월 3일				
압 류 사 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 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016	2022-01-07	2022-03-07	5,100,000	581,400	5,681,400

5) 성명(상호) : 김시훈(빌리브)
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김시훈 (빌리브)		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	261-06-02191 850918-1*****	
	주 소 (사업장)	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1, 1층				
채 무 자 (제 3채 무 자)		카카오뱅크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<p>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</p> <p>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</p> <p>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</p> <p>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</p>				
압 류 일 자		2023년 3월 3일				
압 류 사 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 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025	2022-01-07	2022-03-07	3,600,000	410,400	4,010,400

6) 성명(상호) : 한윤지(주모두모바일)

체납자	성명 (상호)	한윤지 (주모두모바일)	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	612-86-00845 131411-0*****		
	주소 (사업장)	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4(원곡로)				
채무자 (제3채무자)		우리은행				
압류재산의 표시		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				
압류일자		2023년 3월 3일				
압류사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046	2022-01-12	2022-03-12	3,600,000	496,800	4,096,800

※ 실제 체납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부과에 따라 달라짐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3년 4월 10일까지)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, msh0308@korea.kr)